

2020년도 제25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19.(월), 14:00 ~ 16:0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0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최승수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원장
2. 전차(제2020-15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심의위원
3. 안건상정	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 사무처장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4호: 분과위원회 구성(안)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 주요내용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구함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0-134320호(순번 1번)는 제3분과위원회(2020. 8. 27. 개최, 제2020-185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예고편을 제공한 사안임.
- 안건번호 제2020-134321호(순번 2번)는 제1분과위원회(2020. 10. 12. 개최, 제2020-241회 회의)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에서 이모티콘을 무빙 이미지 파일(GIF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0-134320호(순번 1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예고편

을 블로그에 올린 사안임. 블로거가 일본 애니메이션 예고편을 올리고 본편을 이어서 게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점, 블로거가 임의로 본편의 뒷부분을 임의로 분리해서 예고편으로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

- 안전번호 제2020-134321호(순번 2번)는 밴드에서 블로그, 카페 등에서 댓글에 사용할 수 있는 무빙 이미지를 무단 배포하고 있어 권리자가 해당 밴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사안임.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24건의 무빙 이미지 게시물에 대해 각각의 이미지가 게시된 URL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대응팀에 게시물 단위로 다시 채증해서 심의를 요청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140개 계정에 대해 34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중 중복 청구(모바일 웹하드)된 15개 온라인서비스의 60개 계정은 부결하고 그 외 19개 온라인서비스의 80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류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 제4호: 분과위원회 구성(안)

- 주요내용

- 심의위원의 일정 변경 등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변경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성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5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발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4쪽, 16쪽, 17쪽, 20쪽, 21쪽, 22쪽, 26쪽, 31쪽, 32쪽, 36쪽, 40쪽, 41쪽, 42쪽, 42쪽, 62쪽에 자구 수정 의견을 주셨음. 8쪽의 저작물명, 블로그명, 11쪽의 블로그 소개글, 18쪽의 소프트웨어명, 제작자명, 20쪽의 게시물 내용, 22쪽의 공표일, 저작물제목, 회사명, 23쪽의 영상물 번호, 24쪽의 공문 내용, 37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38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저작물명, 방영일, 제작사명, 52쪽의 앱명, 나라명, 사이트 주소, 53쪽의 앱명, 나라명, 제작사명, 54쪽의 앱명, 56쪽의 앱명, 회사명, 57쪽의 앱명, 회사명, 58쪽의 앱명, 59쪽의 앱명, 플랫폼명, 61쪽의 앱명, 63쪽의 앱명, 64쪽의 앱명, 67쪽의 앱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되어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게시글, 앱명, 나라명, 사이트 주소, 플랫폼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의결안건

○ 제1호: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

- 정성희 사무처장이 의결안건 제1호 검토내용을 보고함.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으면 전문위원 임명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문위원 임명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전문위원 임명 동의안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원안대로 전문위원 임명에 동의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로, 안전번호는 제 2020-134320호, 134321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34320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938화 예고편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 중인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134320호 게시물에 직접 접속해서 보여주면서)심의 대상 게시물은 일본 애니메이션 ‘◇◇◇’ 938화 예고편을 게시한 것으로 본편에 이어 연속으로 제공되는 영상물을 분리 게시하였음.

(제2020-185회 회의록을 보여주면서)분과위원회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예고편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된 적이 없고 예고편에 대한 심의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A 위원: 예고편의 재생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예고편의 재생 시간은 30초임.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예고편은 본 편과 별도로 제작 및 공개되어 시청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임.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약 24분 되는 영상의 일부고 본 편과 분리해서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인 '◇◇◇' 938화 예고편은 2020. 8. 16. 게시되었고, 일주일 후인 2020. 8. 23. 938화 본 편이 방송과 동시에 올라갔음.

게시판 목록에 '◇◇◇' 937화 예고편이 2020. 8. 9. 게시되었고, 937화 본 편이 '◇◇◇' 938화 예고편 게시일과 동일한 2020. 8. 16. 게시됨. 2020. 8. 27. 개최한 제2020-185회 회의에서는 예고편과 본 편 게시물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본 편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확인되지 않음.

'◇◇◇' 397화 본 편과 938화 예고편은 하나의 저작물을 두 개로 분리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하나의 영상저작물 전체를 복제·전송한 것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반적인 홍보 목적으로 별도 제작된 예고편 영상물과 성격이 다르며 게시자는 일주일 간격으로 본 편과 예고편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음.

- 박성호 위원장: 본 사건은 2020년 8월 27일 개최한 (구)3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로 회부해주었음.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께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구)3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으로 심의대상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인 '◇◇◇' 예고편과 본 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음.

심의일 현재 938화 본 편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분과위원회 심의 당시에 게시되는 패턴을 봤을 때 938화 본 편이 일주일 뒤에 게시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음.

심의 당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A 위원: 30초 분량의 예고편을 올린 목적이나 의도를 고려할 필요도 있지만 분량의 비중이 극소함.

- C 위원: (구)3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제2020-185회 회의록을 보면 예고편에 대한 심의기준 정립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음.

예고편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정권고 여부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예고편이 권리자가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일본 애니메이션 마니아가 예고편만을 게시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에는 예고편과 본 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게시되고 있고 권리자의 이용허락 없이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본편과 예고편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함.

- A 위원: 해당 블로그에 예고편과 본 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게시되는 일련의 구조가 확인되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 목록을 보여주면서)확인되었음.

- D 위원: 블로그에 게시된 목록 작성일을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예고편과 본 편이 게시되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애니메이션의 본편은 저작권을 보호해서 시정권고하고 예고편은 시정권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예고편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해도 괜찮다고 인식할 수 있음.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올라간 블로그 목록을 보면 예고편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 중이고 본 편은 게시중단된 것으로 보임. 본 편은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 되었으므로 예고편만으로 불법복제 전송된 본 편을 볼 수 있게 유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D 위원: 분과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해당 블로그에 본 편과 예고편이 모두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홍보를 목적으로 관리자가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닌 점, 본 편 마지막 부분이 영상에 함께 포함되어 본 편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점 등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올라간 블로그에 예고편이 게시되어 있고 일주일 뒤에 본 편을 올리는 구조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 블로그 운영자는 예고편을 통해 본 편을 블로그에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유인하는 목적이 강함. 홍보를 위해 관리자가 제작한 것이 아닌 본 편 뒷부분을 임의로 분리해서 예고편으로 만들어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당 예고편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예고편에 이어서 본 편을 이용하도록 블로그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본 편의 뒷부분에 수록이 되었던 예고편을 임의로 분리해서 게시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343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박성호 위원장: 다음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4321호는 권리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사안임.

◆◆◆ ◆◆ ‘▽▽▽▽▽▽▽▽▽▽▽▽▽▽▽▽’에서 민원인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스티커 ‘♥♥♥ ♥ ♥♥ ♥♥’ 24종 전부를 제공하고 있음. 민원인은 신고하면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였음.

(★★★ ★★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 ♣♣♣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음.

♠♠에 ‘▲▲▲ ▲▲▲ ▲▲▲ ▲▲ ▲▲ ▲▲ ▲▲ ▲▲▲ ▲▲▲▲ ▲▲▲▲’라고 안내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에 직접 게시되었으며 ◆◆◆을 보기 위해서는 ♠♠에 가입신청 후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는 ◆◆◆ 전체에 대해 민원 접수되었음.

◆◆◆에는 2020. 9. 29. 기준 13,556건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으며, 심의 요청된 전체 ◆◆◆ url 중 신고된 저작물은 총 24건임. 개별 이미지 파일에 대한 세부 url이 심의요청된 것은 아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체 ◆◆◆ 안의 개별이미지에 대해서 url을 특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으나 분과위원회 이후 재확인 결과 개별 게시물에 대한 url을 확인할 수 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네이버 OGQ 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음. 시정권고의 대상은 신고된 24개 미술저작물뿐만 아니라 13,556건의 사진저작물 전체가 됨. 현재 그 내용 및 불법복제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3,556건의 사진저작물 전체에 대해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

- A 위원: 분과위원회 회의 이후 사무처에서 확인했을 때 사진첩 내 이미지에 대한 url을 특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당 게시물에 대해 특정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1분과위원회에서 사진첩 전체에 대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것임.
한편 온라인대응팀에 채증할 때 어디까지 요구해서 심의대상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D 위원: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가 필요한데 게시물 단위가 아닌 사진첩 전체 url에 대해 시정권고하게 되면 합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 신고 건에 대해 해

결방안을 다 같이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 회부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전체위원회 회부하고 사무처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미지별로 url을 특정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온라인대응팀과 협의해서 게시물별 url로 다시 채증하여 심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게시물 url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별로 다시 채증하여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 F 위원: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24건의 게시물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 D 위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에 <<<< <<<< <<<< <<< <<<< <<<< <<<< <<<< <<<< <<<< <<<<고 신고해서 온라인대응팀에서 ◆◆◆ 전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됨.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 24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면 될 것으로 보임.
- A 위원: 하나의 url에 포함된 콘텐츠가 다수인 경우 불법복제 전송물을 시정조치하면 합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여타 콘텐츠까지 포괄해서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되므로 세부 url을 확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대응팀에 다시 심의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온라인대응팀에서 심의 요청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G 위원: 만약 세부 url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지?

- A 위원: url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34321호는 게시물 단위로 분리가 가능하므로 온라인 대응팀에 민원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24건에 대해 각 게시물별로 심의 요청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8097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80971호는 온라인대응팀에서 게시물 단위로 다시 채증하여 심의 요청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함.”

o 제3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3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4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중복 청구된 60개 계정은 부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80개 계정에 대해 1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4호: 분과위원회 구성(안)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의 일정 변경 등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변경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였음.
- 박성호 위원장: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분과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

(분과위원회 구성(안)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함”

5. 폐회 선언

○ 박성호 위원장이 제25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5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4.

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백대용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최승수

위원 홍지만